

칠곡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1. 29.
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. 11. 17.

나. 제출자: 칠곡군수

다. 회부일자: 2023. 11. 22.

라. 상정일자: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(2023. 11. 29. 상정·심사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출설명자: 환경관리과장 최일영)

가. 제안이유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7조의2(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칠곡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3조)
- 2)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 - 5년마다 수립·시행(변경) 및 관계기관에 통보
 - 사고 대비·대응역량 목표 및 세부계획, 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, 관련 정보 제공, 배출저감 시책,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등 포함

- 3)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12조)
 - 기능: 화학안전시행계획 및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·변경 등 심의
 - 구성: 관련부서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포함 15명 이내, 임기 3년
 - 운영: 정기회의 연1회, 비밀준수 의무, 위촉직 위원 수당지급
- 4)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 - 교육·훈련방법 및 시기, 사고 유형 및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,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와 자원 및 인력·장비의 동원방법, 주민의 대피 방법·장소 및 출입통제방법, 복구계획 및 긴급구호물자·응급의료지원 계획 등
- 5)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 - 주민소산계획 보완 사항 명시,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협조
- 6)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 - 사고 발생 시간, 장소, 물질, 독성정보, 행동요령, 응급조치요령 등
- 7)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 - 사업장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 가능
- 8)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
 - 매년 화학안전관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
 - 누리집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공개
- 9) 교육·훈련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 ~ 제19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안창호)

○ 「칠곡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」은

-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·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,

-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, 위원회 설치 및 운영, 지역화학사고 대응 계획의 수립 등 칠곡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특이사항 없음

6. 소수의견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[원안가결](#)